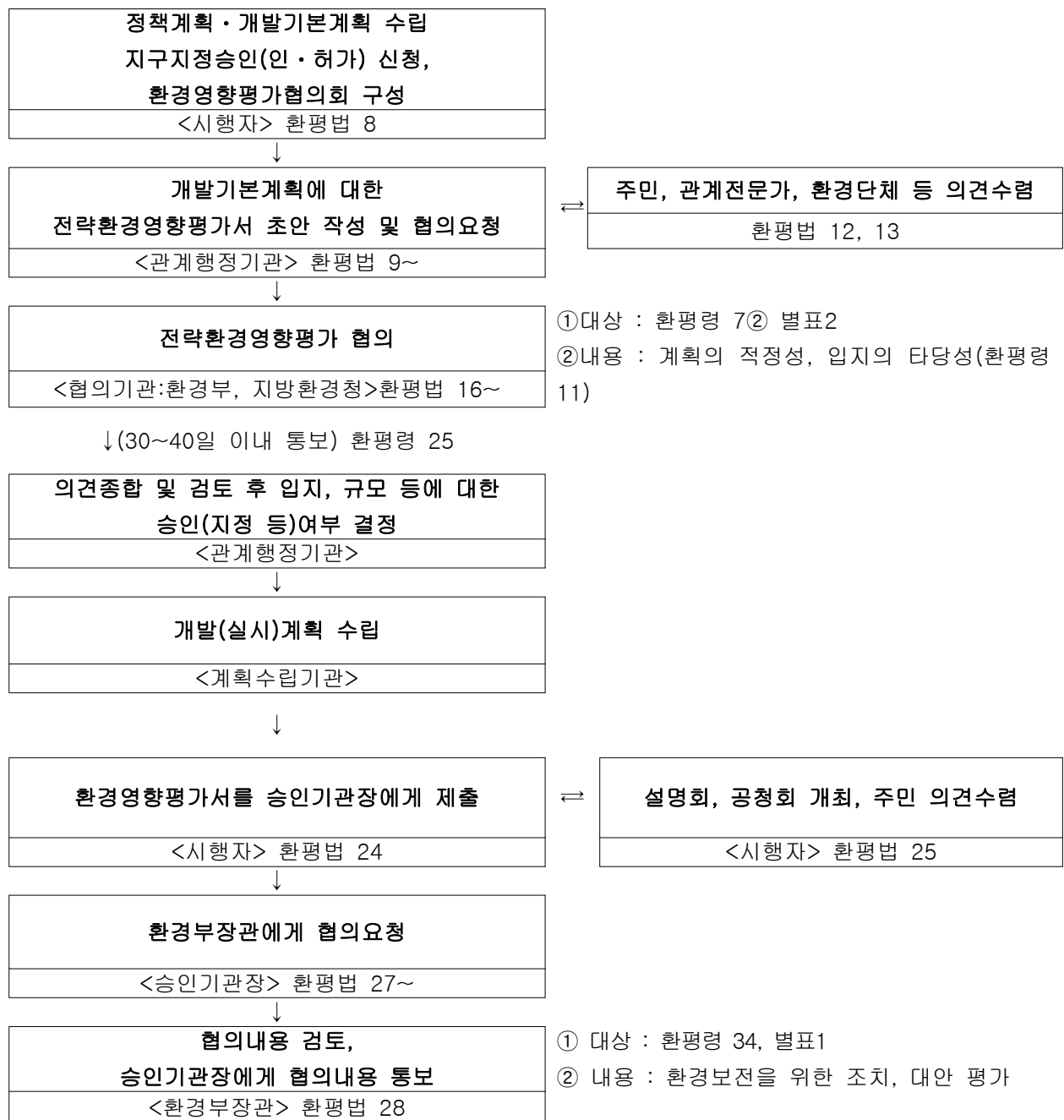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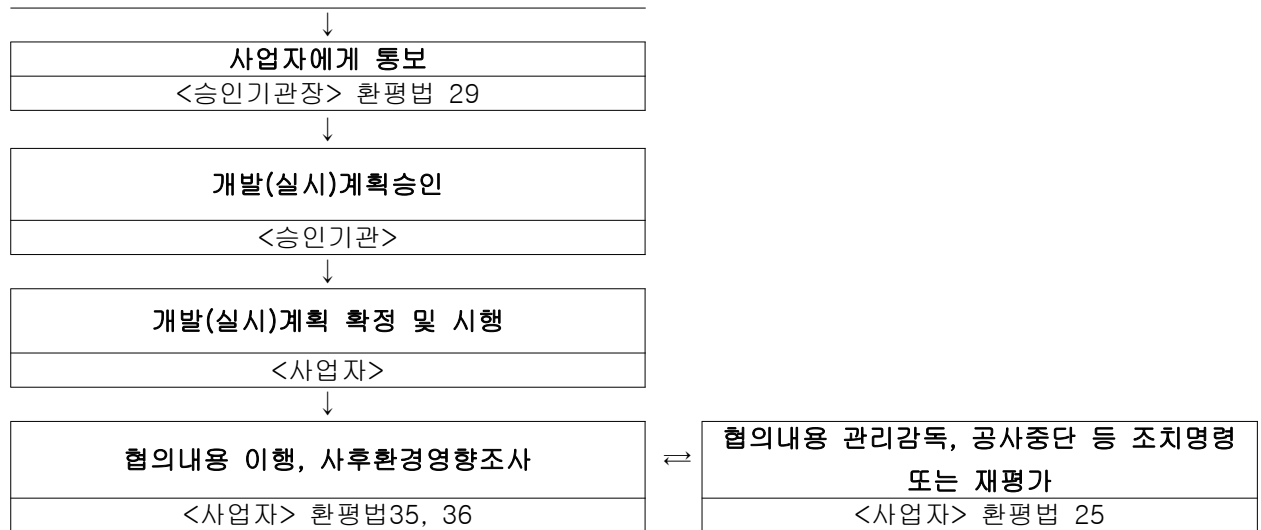


법적대응방안의 이해

2015. 9. 1.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010-9983-1827, eunasu88@gmail.com)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진행절차





단계별 대응수단

가. 환경분쟁이 예상되는 사업계획 단계

-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개청구할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특정해야
-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토론회 참석 의견 개진

나. 환경영향평가단계

- 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 의견제출(환평법 13, 환평령 13, 14)
- 설명회 참석, 의견개진(환평법 13, 환평령 15)
- 주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요구(환평법 13, 환평령 16)
- 환경영향평가업자 형사고발(환평법 74)

다. 허가(승인) 후 공사착공단계

-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사중지가처분, 유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 환경분쟁조정신청(주로 소음·진동사건의 경우)

라. 공사완공단계

- 손해배상청구
- 환경분쟁조정신청

마. 공사 완공 후 시설물 가동, 이용단계

- 유지청구, 손해배상청구
- 환경분쟁조정신청(일조피해의 경우)
-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조업정지명령 등 요청
-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형사고발

2. 골프장사업 결정·승인 등 인허가 필요서류(권익위 자료)

구 분			세부내용
주민 제안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	▪도시관리계획 총괄도(S=1/25,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 ▪도시관리계획(골프장) 결정(변경)도(S=1/25,000)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서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토지적성평가서	▪종합적성등급 평가 - 보전(A) : 입안불가, 중간(B) : 심의, 개발(C) : 입안
		경관성 검토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
		<u>전략환경영향평가서</u> <u>환경영향평가서</u>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교통영향평가서	▪주변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현황,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예측, 주변교차로 교도영향분석 등
	도시관리계획서	개발계획서	▪개발여건분석, 건설계획, 기반시설계획, 설비계획, 운영 계획, <u>자금조달계획</u> , 사업효과 등
		관 련 도 면	▪위치도, 지적도, 지형현황도, 개발계획도, 소유자별 토지 현황도, 지목별 토지현황도 등
	<u>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서</u>		
농지전용협의요청서			▪개발계획서,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및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등
<u>산지전용협의요청서</u>			▪사업계획서, <u>입목축적조사서</u> , 복구계획서 ▪산지전용예정지 평균경사도조사서, 관련도면 등
농업진흥지역해제서류(필요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업진흥지역도면 작성 ▪지적도
기 타			▪시·군의회 의견수렴· 및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자료 ▪ <u>광역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u>
<u>실시계획인가신청서</u>			▪사업종류·명칭, 면적·규모, 공사설계도서, 감정평가서 등 ▪광역시·도 및 시·군수 의견청취 결과 ▪ <u>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u> , 관련도면 등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등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 조달방법 등

케이블카 추진 절차¹⁾

가. 자연공원 지역

- 국립공원은 환경부, 도립 및 군립공원은 해당 공원관리청(해당 지자체)로 공원계획변경 및 시행허가를 신청함

사업계획 수립단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공원계획 변경단계	자연·반려	공원계획 변경 신청 (자연공원법 제15조) 사업자 → 환경부/공원관리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업자 → 지방청
		서류접수 및 검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환경부/공원관리청	검토의뢰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지방청 → 전문가, 관계기관 등
		서류, 평가서 초안 및 관계 기관의견 종합 검토 환경부/공원관리청	의견수렴 환경부 →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 경제성검증기관
		공원위원회 심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 환경부/공원관리청 상정	◀ 공원위원회의 구성(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 위원장(환경부차관)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
		공원계획 변경 고시 (자연공원법 제16조) 환경부/공원관리청	◀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 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허가 및 시행 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자 → 지방청
		궤도사업허가 신청 및 허가 (궤도운송법 제4조) 사업자 → 지자체	궤도사업허가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결과 제출 사업자 → 지자체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0조) 사업자 → 국립공원관리공단/공원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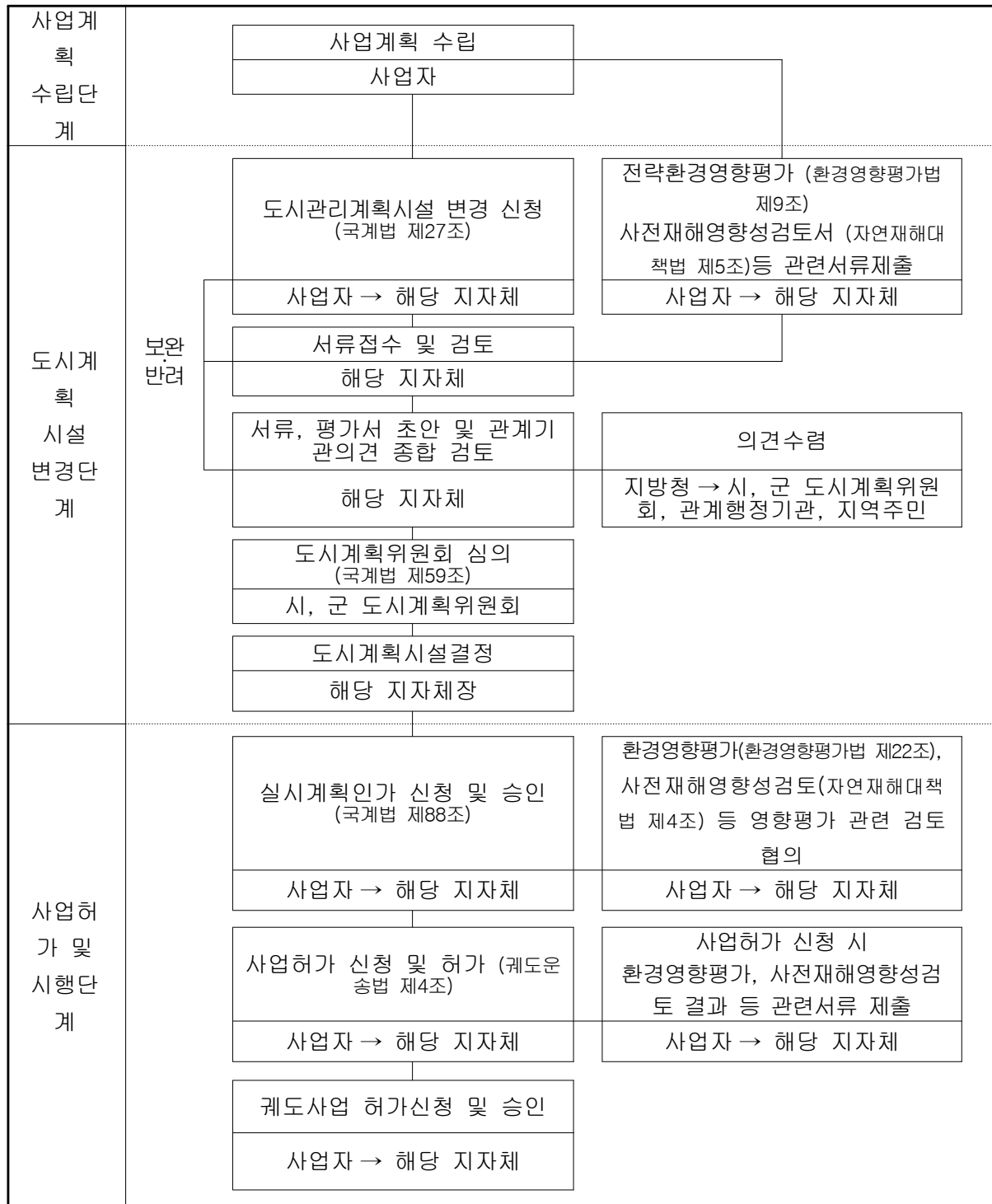
1) 문화체육관광부,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방안 연구 용역(2014. 12.)에서 인용

• 국립공원내 공원계획의 변경 신청에 관련 서류

구분	내용
공원사업 시행 허가 기준 등 (시행령 제17조)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거(雨水管渠)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나. 일반 지역

- 일반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며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개정 환경영향평가법(발췌)

변호사도 아닌 내가 골치 아프게 조문까지 봐야 돼?

공무원은 법에 가장 약하다!

법령정보 검색은 www.law.go.kr에서 또는 스마트폰 어플 ‘국가법령정보’

제00조 - ① - 1. - 가.

(항) (호) (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1019호, 2011.8.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구법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²⁾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³⁾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⁴⁾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⁵⁾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⁶⁾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⁷⁾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대상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⁸⁾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과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결정하기 전에 보완·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협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3.3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7. 철도 (도시 철도 를 포 함 한 다)의 건 설 사업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u>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u>9)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	--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

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그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국토해양부장관(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과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조정이 가능한 경우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⁰⁾
-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¹¹⁾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하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¹²⁾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¹³⁾

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②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

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¹⁴⁾
4.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¹⁵⁾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2) 핵발전소, 송전탑 건설
- 3) 4대강 사업
- 4) 가로림만 조력발전, 인천만조력발전
- 5) 골프장 건설
- 6) ① 주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주민 5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주민총수의 1/2이상일 경우(환평법 시행령 제16조)
- 7)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인천만조력발전 사례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환평법 시행령 제18조) →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사례
- 8)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보공개청구사건
- 9)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삭도 길이가 3.5km여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 10) 밀양 송전탑 사례
- 11)

변경 내용	협의방법	근거조문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	환경부 재협의 대상	환평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항 제1호
사업·시설 규모의 10% 이상 30% 미만 증가	승인기관 검토 + 환경부 의견	환평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 가목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평가서 작성 : 사업자(또는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자)

→ 의견수렴 :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절차적 정당성?)

→ 평가서 검토 : 환경부의 부실한, 천편일률적인 협의의견(내용적 정당성?)

→ 사법부 판단기준 : 사법소극주의?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새만금 사건).

4. 환경민원상담

가. 상담 자세

민원상담에서 **민원**은 주민이 제기하는 일련의 성원이나 청원으로,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라고 흔히 정의된다. 따라서 민원상담의 경우 민원인들은 정보의 결여와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 때문에 사안의 본질을 더욱 잘 알고 싶어 하고 진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때로는 환경단체에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자신의 고통과 처한 상황을 호소할 대상 혹은 함께 다투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은 측면

사업·시설 규모의 10% 미만 증가	승인기관 검토	환평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녹지지역이 확대되는 경우 등	사업자 자체 환경보전 방안 마련	환평법 제33조 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12) 홍천 골프장 사례
- 13) 홍천 골프장 사례
- 14) 강릉 골프장 사례
- 15) 홍천 골프장 사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만일 상담자가 사안의 파악과 문제해결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만 매몰된다면 민원상담이 해야 할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인 위무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민원상담은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 또한 중요하므로 상호간의 존중에 기초하여 민원인과 상담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민원인과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상호이해를 위해 친절하고 안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민원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다거나, 민원인의 주장을 차단하거나 반박하려 들고, 처리결과에 대해 미리예단하게 된다면 이해와 공감을 위한 관계는 요원해 질 것이다.

상담자가 전화상담을 하거나 방문자를 상담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사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것의 관건은 상담자가 사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나. 필요한 자료

- 현장사진 :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전 전체 배경과 더불어, 사건의 흐름을 담은 사진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고시, 공고●공람 : 사업시행단계에서 시행자나 지자체는 구두상으로 선심성 공약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업 완료후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 공고●공람의 단계에서 공약들이 문건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 환경영향평가서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 내역(공항 또는 사격장 소음소송 등으로 인한 신체 건강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 관련)
- 토지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지적(地積)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등을 등록한 문서인데,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필요하다.
-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 소유자의 주소●성명등이 등록되어 있는 서류이다.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필요한 문서인데, 등기부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물등기부와는 구분된다.(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관련)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특정사안이 자신의 지가에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는지를 알기위해 필요하다.
- 지적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적,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등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
-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편집도 확인 가능
- 계약서: 계약의 조항들을 적은 서면으로 계약의 조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것을 누가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 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 위임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하다.

- 토지이용도 :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나 농업용 토지의 이용 상황, 도시나 촌락의 기능, 도로•철도의 노반 또는 토지의 보존•개량을 위한 시설 등을 색채로 인쇄한 지도이다.
- 관련뉴스•신문기사 : 사안을 어떤 관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어떤 시기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법정증거자료로 제출되기도 한다.
- 진정서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서면이다. 민의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존중되어야 하나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이것이 시정 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받은 경우라면 권리를 구제받는데 가중치가 적용되기도 한다.

환 경 민 원 상 담 일 지

【상담경로】 ☐전화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전자우편 ☐기타

20 년 월 일 요일 접수 (상담자)

【민 원 인】

이 름	(☐ 여 ☐ 남)	상대방측 ☐ 개인 ☐ 기업 ☐ 국가 ☐ 지자체 ☐ 기타
연락처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주 소		
연 령	☐ 20세미만 ☐ 20-29 ☐ 30-39 ☐ 40-49 ☐ 50-59 ☐ 60세 이상	

【기초자료】

구 분	세 부 항 목		
발생시기			
발생지역			
상담분류	☐ 소음/진동 ☐ 폐기물 ☐ 대기/분진 ☐ 수질/지하수 ☐ 조망/일조 ☐ 악취 ☐ 산림훼손 ☐ 전자파 ☐ 도로 ☐ 형사() ☐ 기타()		
증거자료 분 류	☐ 토지이용계획서 ☐ 개별공시지가 ☐ 행정청의 공고/공람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 ☐ 계약서 ☐ 각서 ☐ 지적도 ☐ 기타도면 ☐ 토지사용승낙서 ☐ 현장사진 ☐ 테이프(녹취록) ☐ 관련뉴스 ☐ 기타()		
환경측정	☐ 있다 ☐ 없다	측정기관·결과	
타기관민원	☐ 없음 ☐ 1차 ☐ 2차이상	민원제기기관	

【상담내용 및 민원사항】

【상담 후 조치】

조치	☐ 당일상담 ☐ 추후상담() ☐ 자료제공 ☐ 관계기관알선 ☐ 법률상담연계 ☐ 소송지원
----	---

5. 정보공개청구제도

가. 개념

사안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정부관계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예)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 협의의견, 각종 인허가 서류 등

나. 정보공개대상

(1)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

(2) 예외 :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 이익을 저해할 우려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

다. 청구방법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또는 특별·광역시청, 도청,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을 이용하면 된다.

라. 불복절차:

(1) 이의신청(해당 기관에, 비공개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행정심판(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3) 행정소송(법원에, 비공개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둘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송 불가)

마.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빨리 자료를 확보, 검토하여 법적, 행정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 시간관계상 행정심판이 유리함.

사.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정보공개 행정심판청구서 샘플1>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사)인천녹색연합	
	주소 인천광역시 00구 000동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관리인	주소	
[] 선정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대리인	전화번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검단-장수간 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에 대한 비공개결정처 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5. 8. 7.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있음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함	
증거 서류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5 년 8 월 일		

청구인 인천녹색연합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청구인	→ 접수 ○○행정심판위원회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 송달		

210mm×297mm[백상지 80g/㎡]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7. 30. 공개청구한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2009)’를 공개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2009)’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5. 8. 7.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로는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당해 제안서는 접수일부터 제안내용의 제3자 공고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고, ② 제안자의 의견 청취결과,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사업활동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들었습니다.

[소갑 제1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2.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비공개사유 불해당

(1) 해당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 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추정,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로 본다.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⑪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⑫ 주무관청은 제8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8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8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⑭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4.]

(2) 비공개에 관한 위임 없는 무효의 대통령령

민간투자법 제9조 제6항에서는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하여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이라면, 위 시행령 규정은 법령상의 수권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한 공개청구가 아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서는 ‘민간투자법 제9조 제2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와 전혀 별도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적격성 심사자료에 대하여 공개청구하였을 뿐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부설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이유는,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 그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 등을 과다징수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4) 비공개 시한 경과

설령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사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기한은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2009. 2. 13. 포스코건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2009. 10. 12.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2010. 8. 4.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 제안사업이 보류되고 2012년에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조차 삭제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9년 사업제안과 관련한 제안내용 공고 시기는 이미 지난 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 내용의 공고 이후인 현재로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인 것입니다.

[소갑 제2호증 검단-장수간도로 민간제안사업, 소갑 제3호증 검단-장수간도로 민간 제안사업 추진현황보고]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 불해당

(1) 관련 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제1호 비공개 사유(다른 법률상 비공개사유) 불해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민간투자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제7호 비공개사유(경영상·영업상 비밀) 불해당

우선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자체와는 달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심사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인천시민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즉 도로 예정지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백운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세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등 학교와 여러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도로 건설과정 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소음분진 발생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는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등은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으로서, 수많은 인천시민이 쉼터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인천둘레길 조성사업이 진행되어, 인천둘레길 안내지도 양성되었고, 이들 안내자를 통하여 매년 약 5,000명의 시민들이 인천둘레길을 탐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내자를 통하지 않고 탐방하는 시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녹지축에 도로를 건설하려는 검단-장수간도로 건설사업은 이러한 생태복원 사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부당한 사업으로서, 이 사건 적격성 심사자료는 인천시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주장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1. 소갑 제1호증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끝.
1. 소갑 제2호증 검단-장수간도로 민간제안사업
1. 소갑 제3호증 검단-장수간도로 민간제안사업 추진현황보고]. 끝.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청구서 샘플2>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인천녹색연합	
	주소 인천광역시 00구 000동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 대리인	성명 장00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2013년 이후 SK인천석유화학(주) 고도화사업(인천 경인에너지 공장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대한 부분비공개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4. 8. 29.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있음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함
증거 서류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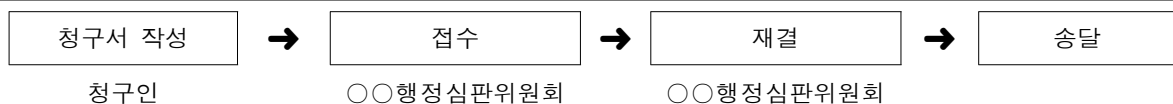
2014 년 9 월 일

청구인 인천녹색연합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29. 청구인에게 한 SK에너지(주)인천complex고도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이후 SK인천석유화학(주) 고도화사업(인천 경인에너지공장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이하 ‘이 사건 사후환경조사서’라 합니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SK에너지(주)인천complex고도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2013년) 중 제3장 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분석, 제6장 종합평가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 내용(제1장 사업의 개요, 제2장 환경영향조사결과, 제4장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제5장 사업장 현지조사·확인내역 등)에 대하여는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에 관하여 ‘① 국가보안비밀, ② 개인정보 또는 ③ 영업비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갑 제1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추측컨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공개사유 중 ‘① 국가보안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②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에 근거하여, ‘③ 영업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정보 비공개는 모두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열거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의 사상, 신조, 지위, 건강상태, 기타 일체의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 판단은 법인 등의 사업활동정보와 같은 기준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¹⁶⁾

따라서 이 사건 사후환경조사서 제1장(사업의 개요) 제3면, 제5장(사업장 현지조사 확인내역) 중 제194면 내지 제196면 및 제7장(부록) 중 제202면 내지 제287면에 기재된 각 정보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로 추측되는바,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한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설령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만 지우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16) 김의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한국사법행정학회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II)』 제230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에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후환경조사서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관한 것인데, 이 공장은 2014. 6. 20. 증설에 관한 준공승인을 받은, 나프타를 주요 원료로 한 파라자일렌 생산 공장(연간 130만톤)입니다. 나프타를 분해해 파라자일렌을 얻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종¹⁷⁾인 벤젠이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어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독물질의 일종인 톨루엔, 자일렌의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톨루엔과 자일렌은 모두 높은 인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소갑 제2호중 유독물질 목록]

그런데 SK인천석유화학이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벤젠을 연간 3,670kg, 자일렌을 연간 4,230kg, 톨루엔을 연간 4,823kg, 나프타를 연간 10,467kg이라는 엄청난 양의 유독물질을 대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2014. 7. 11. 나프타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2014. 7. 14.에도 가스배출설비에서 화염이 일고 타는 듯한 냄새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섰다운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소갑 제3호중 언론기사]

이와 같이 SK인천석유화학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후환경조사서는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후환경조사서 제1장(사업의 개요) 제7면, 제8면, 제4장(협의 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중 제127면 내지 제189면 및 제7장(부록) 제202면 내지 제287면을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다. 국가보안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현재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건에는 ① 국방부가 보유한 1998년 육군중장 박○○의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군검찰의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는 국방부 정보본부의 부대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건(중앙행심 200501187), ② 법무부의 보호일시해제지침과 체류외국인관리지침은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건(중앙행심 200415875), ③ 외교통상부의 한국군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실무시찰단이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 일체는 우리 군의 준비상황과 작전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파병될 부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파병 이후의 임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교섭과 관련된 내부정보나 다른 국가의 상황이 공개됨으로써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건(중앙행심 200705816)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즉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대체로 국방부, 법무부 또는 외교통상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보유한 정보로서 군부대 운영이나 외교상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기업에 불과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이 사건 사후환경조사서 중 제1장(사업의 개요) 중 제4면, 제5면, 제6면, 제9면, 제10면, 제16면 및 제2장(환경영향조사결과) 중 제16면, 제4장(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거의 없는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므로, 이 또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주장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 | | |
|------------|-------------|
| 1. 소갑 제1호증 |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
| 1. 소갑 제2호증 | 유독물질 목록 |
| 1. 소갑 제3호증 | 언론기사 |

[별지]

비공개 대상 정보

SK에너지(주) 인천complex 고도화사업 이후 사후환경영향조가 결과통보서(2013년) 중,

1. 제1장 사업의 개요 중 제3면 내지 제10면, 제16면
2. 제2장 환경영향조사결과 중 제16면
3. 제4장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중 제117면 내지 189면
4. 제5장 사업장 현지조사 확인내용 중 194면 내지 196면
5. 제7장 부록 중 2002면 내지 287면. 끝.

6. 환경소송

헌법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환경분쟁조정신청	고충민원신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민법, 환경분쟁조정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청구소송	
	환경영향평가법	행정심판/취소소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형사고발(처벌규정 있는 경우-죄형법정주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국토해양부령 등		
훈령, 지침 등	법규가 아님,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둘 중 한 가지라도 경과하면 취소소송 불가)

행정심판 관할 : 기초지자체의 결정에 대해서는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
광역지자체, 중앙부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

행정소송 관할 : 피고가 될 행정청이 속한 지방법원 본원

예) 새만금 소송, 4대강 소송, 골프장 취소소송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폐지),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폐지),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2. 8. 22. 대통령령 제13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

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나. 공사중지가처분

예) 천성산 도롱뇽 소송,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중지가처분,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공사금지가처분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사법(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 및 이를 통한 사법질서(사법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① 신청인 단체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헌법상의 환경권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써 승인하고 있으며, 사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국토와 산업의 개발에 대한 공익상의 요청 및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환경의 보전을 통한 국민의 복리 증진과 개발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적 편익의 증대 사이에는 그 서 있는 위치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는 탓에 상호 대립하는 법익들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등 참조), 신청인 단체가 내세우는 환경권의 취지는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에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

임이 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그에 기하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② 신청인 단체가 내세운 '자연 방위권' 또한, 비록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존재의 기반이고, 인간의 편익에 봉사하거나 인간에 의하여 개척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자연의 파괴라는 것이 회복 불가능한 면이 있는 까닭에 자연 또는 그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파괴로부터 자연을 방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다는 신청인 단체의 주장에 경청하여야 할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자연 방위권'으로부터 직접 신청인 단체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신청인 단체의 주장처럼 위 천성산에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 나라 최고(최고)·최다(최다)의 중·고층 습원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계곡과 풍광 내지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터널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와 단층 등 주변의 지질 현황과 관련한 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제반의 협의 및 수용절차를 일부 미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환경단체의 하나인 신청인 단체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신청인 단체의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대법원 2006.6.2. 자 2004마1148,1149 결정-천성산 도롱뇽소송).

다. 환경분쟁조정신청

환경분쟁조정신청은 소음, 진동, 일조피해 사건에서 특화되어 있음.

비용이 저렴하고 소송에 비하여 빠른 판단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증거조사를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하고 있음. 다만 인정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소음의 경우 과거에는 대체로 65dB(A) 이상이면 배상을 인정해주었으나, 2014. 5.부터 배상기준이 70dB(A)로 상향되었음.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4.5)』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생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작성 참고자료

○ 수인한도

소 음 원	평가방법	수인한도		비 고
공사장(건설기계)	Leq, 5min	65dB(A)		주1)
공사장(발파)	Lmax	75dB(A)		
공장·사업장	Leq, 5min	주간	주거 : 55dB(A) 기타 : 65dB(A)	
		야간	주거 : 45dB(A) 기타 : 55dB(A)	

주1) 피해자의 거주지역이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5dB(A) 이내에서 보정할 수 있음

○ 피해배상액 참고자료

-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단위 : 만원/인)

초과소음도 (dB(A)) 피해기간 ^{주2)}	0이상~ 5미만	5~10	10~15	15~20
6개월 이내	7~30	10~50	15~75	25~95
6개월~1년 이내	40~45	60~65	80~90	105~110
1년~2년 이내	50~60	75~80	95~100	115~120
2년~3년 이내	60~65	85~90	105~110	125~130

주2) 피해기간 :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공사기간 중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

라. 손해배상소송

예) 김 양식장 사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 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피고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물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대법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

예)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종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종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량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입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식약청장을 비롯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상 의무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또는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예) 서울대기오염소송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1다

예) 담배소송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갑과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을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인 점, 비소세포암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폐암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선암의 일종인데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낮고 비흡연자 중에도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갑, 을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예) 고엽제소송

(1) 고엽제 노출과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과의 인과관계 유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베트남전에 참전한 관련 선정자들에게 베트남전 복무 종료 후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한 사실,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TCDD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이른바 ‘특이성 질환’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고엽제에 함유된 TCDD에 대한 개개인의 신체적 감수성이 그 발현 여부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 TCDD에 노출된 후 염소성여드름이 발병하는 기간, 만성적인 염소성여드름의 발생 가능성,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전 복무 종료 후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는 데 걸린 기간, 우리나라에서의 염소성여드름 발생 빈도, 우리나라의 폐기물 소각량이나 소각 처리율과 폐기물처리업체 근로자나 일반주민에 대한 혈청 TCDD 농도에 관한 조사 결과,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전 복무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환경적으로 TCDD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전 복무기간 동안 고엽제에 함유된 TCDD에 노출되어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개연성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관련 선정자들은 베트남전 동안 복무지역 등에 살포되거나 잔류하는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 및 개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과의 인과관계 유무

(가) 원심은, 임상의학이나 병리학적으로 고엽제에 함유된 TCDD가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전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거의 없고 그에 관한 인체실험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TCDD와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에게 TCDD가 도달한 후 질병이 발생한 사실로부터 개별 피해자의 질병이 TCDD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고엽제 노출과 각종 질병 사이의 연관성(association)을 조사한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는 전문성, 종합성, 과학성,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위 보고서에서 고엽제 노출과 원인적 연관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sufficient)고 분류한 질병 및 고엽제 노출과 원인적 연관성을 인정할 증거가 시사적이지만 제한적(suggestive but limited)이라고 분류한 질병 중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⑤ 호지킨병, ⑥ 폐암, ⑦ 후두암, ⑧ 기관암, ⑨ 다발성골수종, ⑩ 전립선암, ⑪ 2형당뇨병(위 11개 질병에서 ‘염소성여드름’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을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이라 한다)은 고엽제 노출과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우리나라 군부대의 베트남에서의 작전지역과 임무, 관련 선정자들의 베트남전 복무기간 및 복무지역, 유해물질이 포함된 고엽제의 살포지역, 살포량 및 살포방법, TCDD의 환경 잔류, 인체흡수 및 축적경로 등을 종합하여, 고엽제가 살포되기 시작한 1965년 1월경부터 우리나라 군대가 철수한 1973년 3월경 사이에 베트남전에서 복무한 관련 선정자들은 그 복무 당시 복무지역과 인근 지역에 살포된 고엽제의 TCDD 또는 그 복무 이전의 고엽제 살포로 그 지역에 잔류하는 TCDD에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전에서 TCDD에 노출되어 각 보유 질병에 걸렸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원고들이 증명한 이상, 피고들이 반증으로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에 복무할 당시 노출된 TCDD가 각 보유 질병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농도가 아니거나, 그 질병에 관하여 실제 TCDD에 노출된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발병률이 TCDD에 노출되지 아니한 집단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또는 관련 선정자들의 각 보유 질병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관련 선정자들이 피고들에 의하여 제조되고 미국 정부에 판매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각 보유 질병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역학(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부분의 관련 선정자들이 걸린 당뇨병 등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은 고엽제에 포함된 TCDD 노출에 의하여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선천적·후천적 요인들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원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에 노출되어 여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미국 참전군인들에 대하여 보훈정책적 목적에서 보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1991년 고엽제법

(Agent Orange Act of 1991, Public Law 102-4)에 따라 미국 연방의회와 보건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 보고서는 고엽제 노출과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 즉 고엽제 노출과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위험의 증가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 (statistical association)이 있다는 점만을 나타낼 뿐,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통계학적 연관성은 일반적인 인구군에서 고엽제 노출과 그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 어느 개인이 걸린 질환이 고엽제 노출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나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나라 군인이나 미군을 특정 집단으로 설정한 후 다른 일반 집단과 대조하여 직접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주로 산업적·환경적으로 다이옥신에 노출된 인구군을 상대로 한 기존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 역학적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고엽제 노출과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까닭에 위 보고서는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이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에게서 발병한 비율이 고엽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에게서 발병한 비율보다 더 높은지 여부 및 높으면 얼마나 더 높은지를 규명할 수 없고, 고엽제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지 고엽제 노출과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정과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던 관련 선정자들이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선정자들 개개인의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이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전 복무 당시 그 복무지역과 인근 지역에 살포된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거나 그 복무 이전의 고엽제 살포로 그 지역에 잔류하는 TCDD에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련 선정자들이 베트남전 복무 당시 TCDD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그 개연성을 뒤집을 만한 피고들의 반증이 없는 이상, 관련 선정자들이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비특이성 질환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에 관한 법리 및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마. 환경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은 낮고, 만약 패소하였을 경우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끝...

바. 판례 검색

glaw.scourt.go.kr, www.lawnb.com

6. 환경입법운동